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32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5	김미애의원	2025.3.31.	상정	2025.8.18.
				소위심사	2026.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87	장종태의원	2025.6.13.	상정	2025.8.18.
				소위심사	2026.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99	김선민의원	2025.8.21.	상정	2025.9.22.
				소위심사	2026.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606	백혜련의원	2025.9.2.	상정	2025.11.12.
				소위심사	2026.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58	안상훈의원	2025.11.12.	상정	2026.3.10.
				소위심사	2026.3.12.

나. 2026.2.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2.2.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501호)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다.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2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2.27.) 및 제433회국회(임사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3.1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또한, 건강보험료를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아울러,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율”을 “비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91조”를 “제91조, 제91조의2”로, “시효”를 “시효, 보험료 등 부과액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2. ~ 4. (생략)</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p>	<p>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u></p> <p>3. <u>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u></p> <p>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p>



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는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를 “장기요양급여”로, “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사업”을 “장기요양사업”으로 본다.

조의2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